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79 | 2025.03.31 (2025.03.24~2025.03.30)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3.24~2025.03.30)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정책 연구와 전문가·유관 협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 합리적 제도 정비, ▲ 보험료 및 보장범위 개선, ▲인지도 제고의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체,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행정안전부>는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세액이 가산됨을 명확히 하고,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지급보증 의무 예외사유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등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매입거래 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납품업자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을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 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의원 등 14인)**」 ,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가짜뉴스)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알고리즘의 안정성·신뢰성 및 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알고리즘 설계·운용과 관련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선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조선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서일준의원 등 20인)**」 ,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조선업을 육성하고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연주의의원 등 19인)**」 ,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7%로 하며, 상병수당의 지급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주도록 하고, 질병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사업 시행 시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조항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외에서 시행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

사업주의 정의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

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

전기차 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구동축전지의 성능평가를 의무화하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용도를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안전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여가위>에서 청원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진행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7
-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국토교통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 9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 9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 10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10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10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1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11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11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11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12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12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12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5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16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16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5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4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3인)	1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19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2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20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1
•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서일준의원 등 20인)	21
•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등 21인)	21
•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9인)	22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22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 강준현의원 등 23인)	2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3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2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4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2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	2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26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2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7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28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8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형사]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 [방송통신(TMT)] 업계 부담 경감 및 민간자율성 확대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
- [지적재산권]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대한 과징금부과 정당성 입증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8 (2025년 3월 4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 의무대상 조정(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수 100만 명 이상) 및 자발적 가입 유도 - 보험료(약 50% 인하)·보장범위 개선 및 기업·국민 대상 인지도 지속 제고	2025-03-27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음.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임

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대상으로 하였음. 그러나 ①전체 의무대상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 점검·관리를 위해 합리적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고, ②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범위가 좁으며, ③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급사례가 부족해 보험상품 개선 및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책 연구와 전문가·유관 협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 합리적 제도 정비, ▲ 보험료 및 보장범위 개선, ▲인지도 제고의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목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로 피해구제 기반 마련		
개선 방향	합리적 제도 정비 및 집중 관리	보험료·보장범위 등 개선 정확한 정보제공	기업 및 국민 대상 인지도 제고 지속

먼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 제도의 기준 등을 고려해 의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매출액 10억 원 이상·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1,500억 원·100만 명)하고 집중 관리함.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 또한,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활성화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임

두 번째로, 손해보험 업계와 협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하('25년부터 약 50% 인하), 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임. 구체적으로 단체 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범위에 개인정보위의 분쟁조정을 통한 합의금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등 보험 약관상 보장범위를 명확하게 할 예정임. 또한, 과징금 보험특약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임. 지금은 일부 보험상품에서만 특약으로 과징금을 보장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통해 분쟁조정 손해배상금(합의금)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임.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아울러, 한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협의회, 유관 협단체 등과 의견수렴, 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임

국토교통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 민간 개발업체 등 의견청취 후 마련... 운영 후 법제화 추진
- 공공기여는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 원칙, 합리적으로 계획이익 공유

2025-03-25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체,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음.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여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였음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정의와 원칙)**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음
- ② **(적용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 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③ **(조례와 관계)**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음
- ④ **(공공시설 설치기준)** 공공시설 설치 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의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하며, 접근성 및 개방성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
- ⑤ **(부담한도)** 특혜시비를 우려하여 경직적으로 법적 상한(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공공기여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고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였음
 -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⑥ **(감면 기준)**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등의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④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⑦ **(지가상승분 산정)**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명확히 하였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3-27 시행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410호, 2024. 3. 26. 공포, 2025. 3. 27. 시행)됨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 등을 정하고,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회 위반 시 900만원, 2회 위반 시 1,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4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5-09-26 시행 예정
---------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2025-09-26 시행 예정
---------	-----------------	------------------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5-03-26 시행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2026-03-19 시행 예정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추가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용역이 수행되는 현장에서의 불공정 계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실태조사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지속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고,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2025-09-26 시행 예정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고 후 10년이 지나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25-09-26 시행 예정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 즉시환급 실적 제출 여부 등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9-26 시행 예정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제도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9-26 시행 예정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배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2025-03-25 시행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응축성 먼지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 판매, 판매 목적의 진열·보관·저장,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환경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26-03-26 시행 예정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6-03-26 시행 예정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며,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환경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2025-09-26 시행 예정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는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국토교통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2025-03-27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사용사업자 중 우수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에 경영상태 및 기술역량 등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고,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드론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국가에서 구축한 드론 관련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을 추가하며, 우수사업자가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차 위반 시 3개월의 효력정지, 2차 이상 위반 시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및 지정 공인 인증 마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3.24. ~2025.04.08.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는 한편,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법률과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세액이 가산됨을 명확히 하고,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상향 (안 제28조의2 등)
- 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투상세 가산 명확화 (안 제100조의23제6항)
- ③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마련 (안 제100조의23제7항부터 제9항)
- ④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신설 (안 제100조의23제8항)

※ 문의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전화: 044-205-3837, 팩스: 044-204-8969)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3.24. ~2025.05.07.
-------	------------------------	-----------------------------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55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4761, 팩스: 044-201-5587)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3.25. ~2025.05.07.
-------	--------------------	-----------------------------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및 임대하려는 경우 공급받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안정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38, 팩스: 044-201-5661\)](tel:044-201-3438)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3.26.
~2025.05.07.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타워크레인 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부당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현장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는 권상용 체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38, 팩스: 044-201-5661\)](tel:044-201-3438)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3.26.
~2025.05.07.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부 인증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767호, 2025. 1. 31. 공포)됨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 삭제)
- ②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기준 중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관련 내용 삭제 등 (안 별표 5 나목)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tel:043-719-340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2025-03-25 발의

현행법에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공정위가 조사한 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점검 결과, 551건의 지급보증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됨. 담당자 과실로 지급보증 미가입, 계약사항 변경에도 지급보증 미갱신, 지연 가입 등 위반의 유형 또한 다양함. 게다가 최근의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및 자금 경색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마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급보증 의무 예외사유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 여력을 강화하고자 함

또, 현행법에는 일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렇지만 최소 2회분 이상의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야 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현금비율과 다르게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없어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은 압류나 양도, 면제 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해 대금 채권의 이행을 우선순위로 보장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2025-03-26 발의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특약매입 등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품 이후 최장 70일 동안 대금수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가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 중단되었고, 제품 판매분에 대한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매입거래 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납품업자들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둠으로써 납품업자들의 자금 유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8조)**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5인)

2025-03-28 발의

현행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과정을 포함한 경영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인증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인증의 의미는 제품·서비스 등이 국가·국제표준 등 일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증명하는 것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은 그 의미·성격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24년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에 포함시킨 바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그 인증 심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실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비용을 인증제도 운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국회정무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사업자에게 납부받은 인증 심사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심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지정 심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2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025-03-25 발의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

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으로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2,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4인)

2025-03-25 발의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첨단제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외에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생산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을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2025-03-27 발의

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3.6%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18.7%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경영 비용으로 임차료를 꼽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 임

대료 지원 강화를 꾀은 비율도 11.7%에 달하면서 자영업자의 연이은 폐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료 지원 정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도 10%p 상향함으로써 임대인의 임차료 인하를 촉진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안 제96조의3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3인)

2025-03-24 발의

최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크 유튜브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 또는 댓글에서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을 일삼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자들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책임주의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2025-03-24 발의

유튜브상에서 개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하고 가짜뉴스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사이버레크 유튜브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유튜브상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책임 부과 측면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가짜뉴스)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기 사항을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2025-03-25 발의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알고리즘이 금융, 의료, 채용,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알고리즘이 특정한 편향을 내포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특히 고 위험 인공지능에서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생명, 안전, 기본권,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오류 및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알고리즘의 안정성·신뢰성 및 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알고리즘 설계·운용과 관련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61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2025-03-27 발의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해당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등급변경여부도 신속히 결정하고자 함

현행법은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신고한 내용이 이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 종료된 후 등급유지 여부가 통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 내에 게임물 내용수정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신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정 내용을 실시간 확인토록 하여 뒤늦게 등급유지 여부를 통보하는 폐단을 막고자 함. 또한, 수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21조제5항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025-03-27 발의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로,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으나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위반에 대한 영업자 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검사명령 제도의 근거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허가받은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임차하여 가공·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서일준의원 등 20인)

2025-03-24 발의

조선산업은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이나, 최근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이 20% 이하로 하락하면서 국내 조선산업 위기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국 조선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중국과의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생산시설 및 기술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선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조선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박지혜의원 등 21인)

2025-03-25 발의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산업 규제가 강화되는 등 녹색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어 왔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2020년에 이어 다시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를 추진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고 국제협력보다 국익을 앞세워 탄소중립 정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미국이 에너지 전환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국에 유리한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분석됨

이와 같이 국내외 기후대응 정책의 자생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시기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은 탄소경쟁력 확보와 고유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원이나 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 금융·인력·기술·협력 등의 지원 및 녹색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등 19인)**

2025-03-25 발의

2024년 국내 조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256억 3천만 달러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지만,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 이하로 감소하였음

국내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와 시장 지배력 강화, 조선산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부족 등으로 향후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조선업을 육성하고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 등을 규정하여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2025-03-27 발의

현행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 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간 또한 지나치게 짧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종업원 등의 분쟁 조정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제2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강준현의원 등 23인)

2025-03-27 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첨단전략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임

우리나라도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3년간 17조원)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해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출 중심의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규제 준수 의무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특히 첨단산업 지원의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025-03-24 발의

우리나라는 아플 때도 출근해 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 현상이 심각함. 한 연구에 따르면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사람 수는 아파서 쉬 사람 수의 2.37배로 유럽 국가의 평균 수치인 0.81배를 압도하는 상황임. 이에 더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를 명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196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7%로 하며, 상병수당의 지급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의 2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1인)

2025-03-26 발의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유통·판매를 할 때에는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025-03-24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주도록 하고, 질병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62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2025-03-24 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사업지역 제한 등 국내 사업 여건상의 제한이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외 사업 여건과 무관하게 해외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그 예로 국내 공공기관 간 중복 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관리만 하도록 제한하였으나, 국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외 하수도 분야는 물론 상하수도 통합사업 참여도 불가능한 상황임

물산업조사기관 GWI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성장산업으로 향후 국내기업의 참여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임. 그런데 최근 해외 물산업은 다수가 융복합 사업 형태로 발주하는 추세로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진출 시 자본 조달 및 현지 정부 협의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분야에서 높은 대외신인도와 해외사업 경험 및 투자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투자사업 추진에 적합하나 이러한 제한으로 참여가 불가능해 국내기업의 참여기회도 더불어 제한됨. 해외 하수도 사업의 경우에도 국외 사업 수주 시에는 국내 기관 간 업무중복의 우려가 없어 제한이 불필요하며, 민간기업에서도 동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사업 시행 시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조항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외에서 시행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개정하여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시행가능성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물 분야 해외진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안 제9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2025-03-27 발의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배달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안전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주와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안전 보장에 대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배달 노동자들은 다양한 위험 요소에 직면해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안전 규정이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배달 노동자들은 교통사고, 신체적 부상,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안 제2조제4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2025-03-27 발의

현행법 제16조의10은 사업주에게 보험료 징수를 근거를 위한 보수총액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행정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세무당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6조의10제7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2025-03-27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116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2025-03-28 발의

현행법은 설비나 물질, 작업방법, 작업장소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단독으로 하다가 긴급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2인 1조 근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38조제4항 등)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5-03-24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 사용 시멘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주택이나 빌딩 등 건축물이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를 활용하여 건축되는 경우가 많으며,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최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되었으나 이는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의2 및 제10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2025-03-25 발의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비행 600시간 주기 안전점검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발표됨. 현재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중간점검, 비행 전 후 점검 및 정기점검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항공기 제조사의 지침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사고 기종 항공기의 경우 가장 짧은 점검주기는 600시간으로 마모 및 기체 이상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령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여 여객 안전 확보 및 안전한 항공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10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025-03-27 발의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 리콜, 교체 등으로 사용을 마친 전기차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원래 용도로 재제조 및 타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안전성 확보 등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사용 후 배터리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차 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구동축전지의 성능평가를 의무화하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용도를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안전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025-03-28 발의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하여서는 현행법령에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공사의 특성 및 현장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낮은 품질의 공사 목적물이 공급되어 하자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안 제45조제2항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여가위	청원심사소위	4/3(목) 10:00	- 청원 심사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4/2(수) 14:00	-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3/31(월) 14:00	수입 꽃·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국회 토론회	김영환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3/31(월) 15:00	콘텐츠산업 점검 및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김재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4/1(화) 14:00	2025 OTT 비즈니스의 변화 및 대응	한민수 의원실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4/2(수) 09:30	잠재적 건설재난·중대재해·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위한 시설 물 방수설계 및 감리기술 고도화 방안	이연희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4/2(수) 10:00	AI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vs 활용 해법은?	김장겸·최보윤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4/2(수) 14:00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 :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기술 혁신의 미래	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4/4(금) 14:00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토론회 : 지속가능한 방안과 정책 과제	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3/31(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6호(2025-6호) 발간	국회도서관	
	4/2(수)	「금주의 서평」 제722호(2025-13호) 발간		
	3/31(월)	「2025년 NABO 경제전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3/31(월)	「2025년 대한민국 재정」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3/2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7호(2025-4호)	국회도서관	
	3/26(수)	「금주의 서평」 제721호(2025-12호)		
	3/26(수)	「Data&Law」 제27호(2025-2호)		
	3/28(금)	「팩트북」 제116호(2025-2호)		
	3/25(화)	「NABO Focus」 제99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3.24.~2025.03.30.)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3/25(화)	형사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 1864 판결
3/26(수)	방송통신(TMT)	업계 부담 경감 및 민간자율성 확대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
3/27(목)	지적재산권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대한 과징금부과 정당성 입증
3/28(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8 (2025년 3월 4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